

<한국기술혁신학회 2005년 춘계 발표원고>

국내 인증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 품질인증제도를 중심으로

고대승*, 이동욱**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02-589-2200, dskoh@kistep.re.kr*, redu@kistep.re.kr**

The Improvement of Korean Certification System

Dae-Seung, Koh* and Dong-Uk, Lee**
Senior Researcher*, Researcher**

1. 서론

(1) 표준과 인증제도

한국산업규격(KS)에서는 '표준'을 품질관리의 측면에서 '관계있는 사람들 사이의 이익이나 편리가 공정하게 얻어지도록 통일·단순화할 목적으로 물체, 성능, 능력, 동작, 절차, 방법, 수속, 책임, 의무, 사고 방법 등에 대해 미리 정해 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강신민 외, 2003). 특히 제품으로 관점을 좁히면 표준은 제품의 종류, 등급, 모양, 치수, 설계 방법, 제조 방법, 시험 방법, 포장법, A/S에 이르기까지 제품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되는 기술적 사항에 대해 미리 정해둔 것이라 할 수 있다. 고객의 요구 사항이 갈수록 구체화되고 까다로워짐에 따라 전사적 관점에서의 품질관리 기법들이 각광받고 있으며, ISO 9000으로 대변되는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이 널리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2년 4월에 ISO 9000을 국가 규격으로 채택한 53번째 국가가 되었으며(안웅, 1994), 2004년 현재 ISO 9000 인증을 받은 기관의 수는 15,000여 개에 이른다(산업자원부, 2004).

여기서 '인증'이란 한마디로 '표준'을 잘 따르고 있는가를 판정해 주는 것을 말한다. 즉, 특정 제품이나 시스템이 원래의 규격에 맞도록 제작(시스템의 경우 시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여 그 적합 여부를 제 3자가 판정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산업자원부, 2004). 이러한 인증제도는 불량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돕는 등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다. 특히 고객 중심의 품질 관리의 중요성이 인지되고 '인증'을 받는 것 자체가 기업의 가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인증이란 제품이나 시스템이 어떤 요소를 포함해야 하는가를 정하는 요구 사항일 뿐이며, 품질 시스템을 규격화, 획일화하는 잣대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이호준, 1998).

(2) 인증의 종류

인증의 종류는 강제성의 여부, 인증 분야, 인증 주체에 따라 다음 <표 1>과 같이 구분할 수 있으며, 적용 범위에 따라 국제인증, 지역인증, 국가인증, 단체인증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구자항 외, 2003).

<표 1> 인증의 종류와 예

구분기준	종류	의미	인증제도의 예
강제성 여부	강제인증	주로 안전, 건강, 환경 등과 관련된 것으로 개별 법령에 의해 운영	전기용품 안전인증, CE(EU), CCC(중), 특정전기용품 PSE(일), FCC(미)
	임의인증	품질보증을 목적으로 필요한 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인증	KS인증, ISO 9000 등 시스템인증, JIS인증(일)
인증분야	제품인증	일정기준(안전인증기준 등) 이상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음을 인증하는 것	전기용품 안전인증, 법정계량기형식인증, KS 인증
	시스템인증	품질경영 및 환경경영 등 보증체제에 대한 인증	ISO 9000, ISO 14000, QS 9000 등
인증주체	제3자 인증	기업 등이 제조한 인증대상 품목을 독립된 제3의 인증기관이 심사하는 것	KS인증, ISO 9000 인증 등 대부분 인증제도
	공급자 적합성 선언	기업체가 자사제품이 일정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스스로 평가하여 자체 인증하는 것	EU, 美, 日 등 제조물책임법이 확립된 선진국들이 특정제품에 대해 채택

2. 국내 인증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주요국 인증제도 현황

ISO 9000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제도가 도입된 이후 인증 업무 자체가 ‘인증산업’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확대되었으며, 인증에 대한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인증기관들은 국제기구를 활용하여 인증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소비자 권익 보호, 환경보호, 안보 등을 목적으로 독자적인 인증제도를 마련하여 무역상 기술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은 상품수출시 일종의 통관보증서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에 우리나라도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존 인증제도의 개선 및 정비,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국내 인증제도의 마련이 절실한 현실이다.

미국은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인 추진을 원칙으로 하나 안전·환경·보건 분야는 강제인증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인증제도로는 전기안전(UL마크), 식품안전(FDA 승인), 전파안전(FCC마크) 등이 있다.

유럽연합(EU)은 표준이나 지침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CE마크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 위생, 건강, 환경과 관련한 제품이 유럽연합이 정한 기본적인 조건을 준수한다는 의미로서, 대상품목이 CE마크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유럽연합 내의 반입과 유통이 금지된다. 규제지역은 유럽 18개국이며, 저전압기기 등 21개 품목군을 대상으로 199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강제, 임의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기용품안전(PSE), 생활용품 안전(PSC), 농산물안전(JAS) 등의 인증제도가 있으며, 소비 생활용 제품(127개 품목)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활용한 민간차원의 SG 마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내 생산품의 상품안전인증(CCEE)과 수입제품의 수입상품안전품질인증(CCIB)을 통합해 중국강제인증제도(CCC) 채택하였다(전선케이블 등 132개 품목 대상). 이는 중국 내에 유통되는 상품의 안전 및 품질인증제도로, 이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중국 내 생산, 수입, 수출이 모두 금지된다.

(2) 국내 인증제도 현황

국내 인증제도에는 강제인증과 임의인증이 있으며, 정부 각 부처별로 개별 법령에 의거 다수의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강제인증의 경우 10개 부처, 31개 분야, 28개의 법령에 의해 인증제도가 운영 중이며, 임의인증은 9개 부처 17개 법령과 민간인증에 의해 34개의 인증제도가 운영 중이다. 정부 부처 및 민간단체의 필요에 따라 이러한 인증제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2> 국내 강제 품질인증제도 현황

구분	관련 부처	대상분야	관련 법률	대상품목	인증마크
안전	산자부	전기용품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선/전원코드 등	
		공산품	품질경영촉진및공산품안전관리법	등산용로프 등	
		승강기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승강기부품 등	ESQ마크
		가스용품	액화석유가스안전및관리법	가스렌지 등	
		고압가스용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안전밸브 등	
		열사용기자재압력용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1,2종 압력용기	
		항공기부품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고정의비행기 등	-
	건교부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동력전달장치 등	-
		기계식주차장	주차장법	기계식주차장치 등	-
	해수부	선박	선박안전법	구명정 등	-
	노동부	유해/위험기기	산업안전보건법	프레스/전단기 등	
		압력용기	산업안전보건법	갑종/을종 압력용기	
	과기부	원전용기기	원자력법	냉각계통설비 등	-
문화부	무대시설	공연법	조명시설 등	-	
품질	산자부	계량기	계량에관한법률	전기계기 등	-
		에너지효율	에너지이용합리화법	형광램프 등	
	환경부	정수기	먹는물관리법	정수기구조/재질 등	
	건교부	건설기계	건설기계관리법	불도우저 등	-
		항공기	항공법	항공기 소재 등	-
	정통부	무선설비기기	전파법	무선기기류 등	
		전자파장해기기	전파법	정보기기류 등	
	행자부	전기통신기자재	전기통신기본법	유선단말기 등	
소방용품		소방법	소화기, 방염재 등		
환경	환경부	환경측정기기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대기배출가스측정기 등	-
		자동차소음	소음진동규제법	자동차주행소음 등	-
		자동차배출가스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배출가스 등	-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매립지시설 등	-
해수부	안전설비	해양오염방지법	해양오염방지설비 등	-	
보건	복지부 /식약 청	의약품 및 의료기기	약사법	마약류/의료용구 등	-
		화장품	화장품법	기능성화장품 등	-
		식품/식품첨가물 등	식품위생법	식품첨가물 등	-
계	10개 부처	31개 대상분야	28개 법령		

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 국내외 주요 인증제도, 2003을 토대로 재구성

<표 3> 국내 임의 품질인증제도 현황

구분	관련부처	인증제도	인증기관	근거법률	대상품목	인증마크
안전	산자부	공산품안전검정	산자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유해물질 함유 섬유제품 등	
	노동부	S마크제도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용 기계 및 설비	
품질	산자부	품질경영체제 인증(ISO9000)	35개 ISO9000인증기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시스템	
		신뢰성인증(R마크)	기술표준원	-	부품 및 소재	
	중기청	중소기업우수 제품마크 (GQ마크)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우수 중소기업 제품	
	농림부	농산물품질인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품질관리법	품질우수농축산물	
		친환경농산물 인증	"	친환경농업육성법	친환경농산물	
	행자부	보존용품품질 인증	기술표준원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기록물용 종이, 잉크 등	
에너지	산자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인증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고효율 유도 전동기 등	
		에너지마크	"	"	절전형사무 가전기기	
신기술	산자부	한국신기술인증 (NT마크)	기술표준원	산업발전법	신기술(NET) 인증과 신제품(NEP) 인증으로 통합 운영	
		우수품질인증 (EM마크)	"	"		
	과기부	국산신기술인정 (KT마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개발촉진법		
	정통부	우수신기술인증 (IT마크)	정보통신연구관리단	정보화촉진기본법		
	건교부	건설신기술지정 제도(CT마크)	건설기술연구원	건설기술관리법		
환경부	환경신기술제도 (ET마크)	환경관리공단	환경기술개발및지원 법률			

<표 3 계속>

구분	관련부처	인증제도	인증기관	근거법률	대상품목	인증마크
환경	산자부	환경경영체제인증(ISO14000)	28개 ISO14000인증기관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경영시스템	KSA 
		환경설비품질인증	기술표준원	"	국내 개발 환경 설비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GR마크)	기술표준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	일반폐지 등 재활용제품	
	환경부	환경마크	환경마크협회	환경기술개발및지원 법률	생산/소비과정에 저오염,자원절약 제품	
		환경성적표지제도	환경관리공단	"	제품의 환경 영향	
소프트웨어	정통부	S/W품질인증	정보통신기술협회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산업용S/W 등	
	교육부	교육용콘텐츠 품질인증	교육학술진흥원	-	교수학습용 콘텐츠 등	
서비스/디자인	산자부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	기술표준원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유통서비스업 등	
		공산품사후봉사 우수기업인증(AS마크)	기술표준원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공산품 서비스업체	
		우수산업디자인마크(GD)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진흥법	제품/포장 디자인 등	
단체인증	산자부	단체표준인증제도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의 67개 단체	산업표준화법	-	-
민간 자율		산업별 전문 시스템 인증(QS9000)	8개 QS9000인증기관	민간인증(법적근거 없음)	자동차관련부품 및 서비스업	KSA 
	"	품질보증제도(Q마크)	한국생활용품시험연구원 등 6개 민간기관	"	생활용품 전반	
	"	K 마크제도	산업기술시험원	"	공작기계/산업기계/의료기기 등	
	"	HS마크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	위생과 안전성이 요구되는 품목	
	"	제품안전성(S마크)	한국화학시험연구원	"	항균, 살균 등 안전성이 요구되는 제품	
	"	판유리품질인증 안전제도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	"	-	-
	"	귀금속 및 보석 상품의 품질보증	한국귀금속보석감정원	"	금, 은, 백금, 화이트골드	
	"	건자재품질보증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	건자재 관련 모든 제품	
9개 부처 34개 인증제도			17개 법률+민간인증			

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 국내외 주요 인증제도, 2003을 토대로 재구성

이처럼 다양한 인증제도의 운영과 인증기관의 난립으로 부실 인증사태가 급증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즉, 최근 인증획득을 위한 뒷돈 거래 등 인증과정에서의 부정사태 등이 불거짐에 따라 각종 인증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산품과 식품에 대한 국민의 안전의식 신장에 따라 관련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공산품 안전관리는 규제완화 등을 이유로 약화되고, 중국 등으로부터 불량 공산품 수입이 급증해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어 공산품 안전관리 대책 강화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3) 국내 인증제도의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의 인증제도의 문제점은 크게 제도상의 문제, 제도운영상의 문제, 인증의 신뢰성 문제, 인증인프라의 문제의 4가지로 볼 수 있다.

1) 제도상의 문제

우선, 인증제도와 관련된 법적 제도의 미흡을 들 수 있다. 1999년에 제정되고 2000년에 개정된 ‘국가표준기본법’이 존재하나, 인증제도에 대한 모범으로서의 역할 및 기능이 미흡한 현실이다. 강제인증의 예를 살펴보면, 제도운영이 기본법과는 별개로 각 부처별 법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개발 및 수립이 곤란하다. 이로 인해 국제적 환경변화 및 신규분야에 대한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국가 차원의 조정과 통합시스템의 미비로 수많은 인증제도들이 난립하고 있다. 장기적 관점의 표준계획 수립을 위해 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10개 관계 부처 장관 및 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의 장으로 구성된 ‘국가표준심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심의회는 2000년 11월 ‘국가표준기본계획안’을 수립하기에 이르렀으나, 이후 운영 부실로 인해 인증제도가 난립하게 되었다. 기본법 22조에는 ‘①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새로운 제품인증제도가 국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난립하는 인증제도를 조정할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제도운영상의 문제

인증제도의 난립은 결국 운영상 여러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다. 우선 인증제도의 난립으로 소비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인증제도 및 인증마크의 종류가 많아 인증제도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인지도가 미흡하다. 법령에 의해 정해진 강제인증제도, 임의인증제도 외에 민간에 의한 인증제도가 혼재되어 있으며, 대상 분야가 중복되기도 하여 소비자 혼란의 원인이 된다. 일례로 식품의 경우를 살펴보면, 부처별로 가공식품 KS마크, 농산물품질인증마크, 친환경농산물인증마크,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등 다양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인증을 받은 제품이 우수한 품질의 제품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신력을 갖추지 않은 인증을 믿고 제품을 구입할 경우 불의의 피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인증제도의 난립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업체들에게도 피해를 입힌다. 인증기관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 인증 컨설팅 관리 부재 등으로 부실 인증 및 비리가 발생하게 된다. ISO 인증기관의 경우 국내 업체가 35개, 외국계 업체가 50여개에 달한다. 이들 기관이 8,000여건의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인증기관들 사이의 과당경쟁, 외국계 인증기관의 관리방안 부재 등으로 부실인증 및

부정행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표 2>를 살펴보면, 인증을 받은 기관의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인증을 유지하는 기관의 수는 최근 오히려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부실인증에 기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표 2> 연도별 인증유지 누적건수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ISO 9000	105	485	1,406	3,218	5,954	10,609	13,196	14,210	14,751	10,580	12,424
ISO 14000	0	0	54	120	173	296	517	811	1,127	1,605	2,610

자료: 한국인정원 내부자료

부처별로 유사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행정력 및 예산이 낭비되고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환경부가 운영하는 환경마크제도의 재활용제품인증기준과 산업자원부가 운영하는 우수재활용제품품질인증제도는 인증기준이 매우 유사함에도 각 부처에서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농림부의 경우 농산물품질인증과 친환경농산물인증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두 인증제도는 내용이 유사함에도 서로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동일기관에서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각종 인증제도가 부처별로 산재해 있고, 이들은 각기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어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들은 상이한 법률에 의한 여러 부처의 인증제도를 만족시켜야 하므로 시간과 수수료 경비의 추가 부담으로 인증제도에 대한 불만이 고조된다.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환경친화기업인증제도와 ISO 14001은 중복인증으로서 기업체에 이중부담을 주고 있다.

3) 인증의 신뢰성문제

인증기준 및 인증기관을 인정하는 기준이 국제적 규격에 부합되지 않아 인증 결과에 대한 국내외적 신뢰도가 저하된다. 국제기준이 아닌 부처별 기준에 의한 인증제도 운영으로 인증 결과에 대한 국제적 신뢰성이 결여되는 것이다. 인증기관의 지정요건이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외국과의 다자간 협정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유럽연합의 CE, 미국의 UL, 캐나다의 CSA 등은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통용되고 있는 인증마크들이다. 우리 기업들은 국내의 인증이 해외 인증과 호환되지 않아 수출입 시 이중의 부담을 안게 된다. 소비자의 인지도가 높은 품질보증제도(Q마크)조차도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인증에 불과하다.

4) 인증인프라의 문제

인증인프라 문제는 크게 인력문제와 인증설비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우선 인력문제는 양적인 문제보다 질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1960년대에 인증제도가 도입된 이후 인증 관련 인력은 양적으로는 충분히 증가했으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ISO 인증심사원은 2005년 현재 3,357명(ISO 9000: 2,738명, ISO 14000: 619명) 규모이지만, 대부분이 두 분야에 걸쳐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힘들다. 또한 인증제도를 관리하는 부처의 공무원들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전문성이 필요한 인증 분야별 기준 개발 및 조정이 어렵고 인증과 관련된 국제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힘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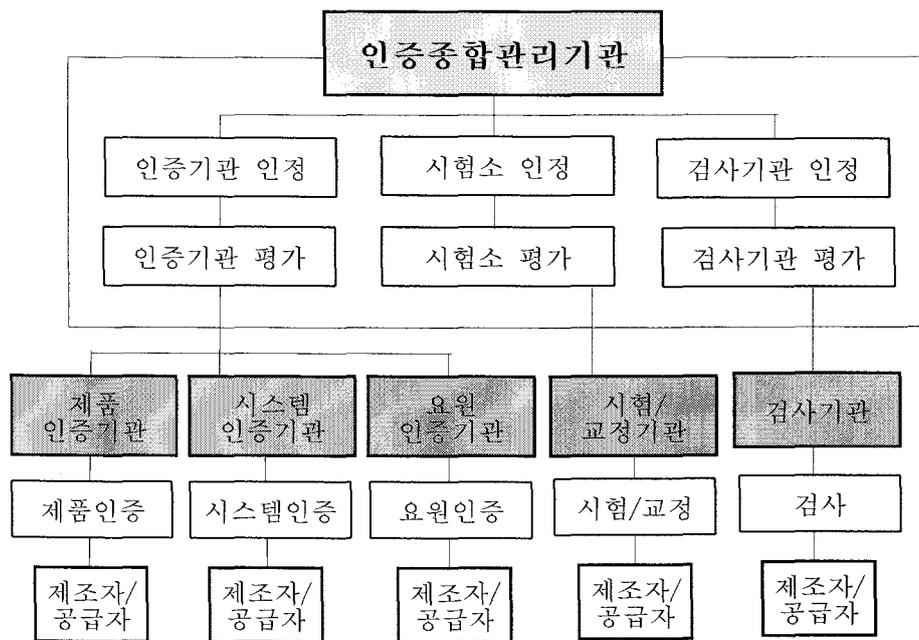
인증설비 문제는 시험분석기관별로 시험설비의 구축 및 활용도가 불균등하다는 것이다. 인증제도의 난립으로 인증기관의 수도 급격히 증가하면서 필요한 설비를 제대로 구비하지 못한 영세기관이 다수 존재하며, 보유하고 있는 설비의 활용도가 저조한 기관들도 있는 현실이다.

3. 인증제도 개선방향

(1) 법과 조직의 개선방향

국가표준기본법을 근거로 부처별 인증관련 법령을 재정비해야 한다. 국가표준심의회는 활성화를 통해 인증제도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표준계획 수립시 인증 관련 항목을 강화해야 한다. 인증제도를 국가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본법시행령의 인증 관련 항목을 재정비하고, 이에 따라 부처별 인증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불필요한 시간 및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유사 인증제도의 부문별 통합·재정립을 통해 국가의 대표 인증마크(National Mark)로 발전시키고, 이를 기술 및 무역에 소프트인프라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인증제도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의 지정·운영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인증종합관리기관의 육성을 통해 법령에 의한 인증 뿐 아니라 법령에 의하지 않는 임의인증까지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인증의 절차와 방법 등을 국가적으로 통일하여 인증획득에 따른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다. 인증종합관리기관 주도 하의 인증체계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그림 1> 인증종합관리기관의 운영에 따른 인증체계

(2) 제도운영의 개선방향

국내외 인증관련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시의성이 떨어지는 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 특

히, 다른 인증제도와 중복되어 독자적으로 존립할 필요가 없는 제도를 선별하여 통합·폐지해야 함으로써 혼란을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해야 할 것이다. 일례로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우수 제품마크(GQ마크)와 민간인증인 품질보증제도(Q마크)는 사실상 거의 동일한 인증제도라고 할 수 있다. 최근 5개 부처에서 각자 운영하던 7종의 신기술인증제도를 ‘신기술(NET)’마크와 ‘신제품(NEP)’마크로 통폐합한 사례가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사한 속성의 제품·서비스는 동일한 인증체계를 거치도록 모듈방식의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EU의 CE인증의 경우, 8개의 모듈방식을 채택하여 각 제품이 어느 모듈을 거처야 하는지가 지침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강제인증 외의 나머지 부문에는 자기적합성선언(sDOC, self Declaration of Conformity)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자의 자체생산품에 대한 책임 및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 자기적합성선언제도란 사업자가 인정기구가 정한 일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업자가 생산한 제품에 대해 스스로 기술기준에 일치함을 선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와 함께 제조물책임법(PL, Product Liability) 및 보험제도 활용으로 제품의 안전 확보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제품의 안전성을 단속하기 위한 행정법규인 안전인증과 제품사고의 책임을 추궁하는 민사법규인 제조물책임법의 상호보완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3) 인증제도의 신뢰성 강화방향

국제 표준에 걸맞은 신뢰성 있는 인증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품목군별 기술기준과 안전기준에 대한 공통규격을 확립해야 하며, 이는 국제적으로 부합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 규격의 기술수준을 국내 기술수준에 적극적으로 인용·조정하여 국내 인증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제고해야 할 것이다. 2004년 7월에는 국내 전기용품의 제품안전규격을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규격으로 일치화 작업을 거쳐 시행한 바 있다. 부처별 개별 법령에 의한 인증기준을 국가규격(KS)으로 통일화하고, 국가규격의 국제규격(ISO, IEC 등)과의 부합화를 가속화해야 한다. 국내 기술기준의 통일화 대상 2,660개 규격 중 2004년 현재 1,999종(75.2%)이 통일화되어 있다.

국가간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통해 무역기술장벽 해소와 함께 해외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 절감 및 제품개발기간 단축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국가간 상호인정협정이란 국가간에 자국의 규격기준에 비추어 상대국의 적합성 평가기관에서 이루어진 적합성평가결과가 자국에서 실시한 것과 동등한 것으로 상호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가간 MRA를 체결한 사례가 없으나(한-싱가포르 MRA는 실질적 합의에 도달, 국회 비준후 체결) 일본은 2001년 EU와 통신단말기 및 무선기기, 전기제품에 대해 MRA를 체결한 바 있다.

인증결과를 소비자 입장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인증표시방법을 개선하고, 품질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품의 성분, 성능, 규격 등에 대해 인증기관이 책임을 짐으로써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4) 인증제도 인프라 강화 방안

인증, 시험, 검사원의 자격조건을 강화하고 업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증 관련 인력 양성 전문기관의 설립, 교육과정의 강화 및 재교육을 통해 전문성 및 윤리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인정원이 외국계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요국과 인정

심사 협력협정 체결을 추진해야 한다.

설비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각 시험분석기관의 시험설비 실태조사를 통해 활용저조 기기를 정상화하고 미비기기를 확충 지원해야 할 것이다. 유사한 시험분석기관의 통폐합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기관으로 육성하고, 장비의 이중구입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하겠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인증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인증체계의 문제점으로는 부처별로 다양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운영 주체 입장에서는 시간 및 예산의 낭비로 운영 효율이 떨어지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인증 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며, 인증을 받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여러 인증을 거치기 위한 다중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인증제도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국제인증규격과의 부합 문제 또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현대에 있어 품질은 기업의 존망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경쟁요소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인증제도의 의의는 기업들이 우수한 품질의 제품 및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의 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다. 외부업체에 의한 형식적 인증, 사후관리 부재, 인증 자체를 목적으로 한 인증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인증제도의 개선은 기업의 경쟁력,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참고문헌

- 강신민, 박중환, 「품질인증실무-KS인증과 품질경영시스템 중심」, 대경, 2003
 구자향, 황병호, 「ISO 9001 2000 품질경영시스템의 운영실무」, 기전연구소, 2003
 산업자원부, “산업표준품질과 국내 인증제도 현황”, 2004
 안웅, “품질경영시스템과 ISO 9000 인증”, 「대한산업공학회 산업공학」, 1994
 이호준, 「ISO 9000 품질창조」, 삼우사, 1998
 중소기업진흥공단, 「국내외 주요 인증제도」, 2003
 한국인정원 홈페이지(www.kab.or.kr)